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2021-10-18	국내산돼지 고기	L12110185265001	지육	190001101057	6	-
				190009904322		
				190014000748		
				190023102376		
				190029000660		
				190051600807		

유의사항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제 20211015-16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폐지 (육돈: 0두)

2. 두수 및 이력번호: 10 두 (19000904322)

이용

3. 중량: 지육: 767 kg 내장 등 기타:

kg

4. 직업장명: 제주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5. 점인번호: 제주02

6. 도축일자: 2021년 10월 15일

7. 도축의뢰인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
(성명: 편영식 (주)팜스토리한농)

8.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월 경과 여부:

비고:

9.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Kg), 식용외의 용도전환(Kg)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검사판소속: 제주특별자치도 둥몰위생시험소

성명: 고영건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9338)

발급번호: 1102-10150019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축신물품질평가사 소속: 제주지원

성명: 이학철

신청인	상명	편영식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17-85-08678
업소명	(주)팜스토리한농		법인유형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		043-211-7721	
도록증	업체명	제주LPC	등급판정일자	2021년 10월 15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정로 746-31		

(단위: 두)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190009904322(320)	2	190009904322(321)	1	190009904322(322)	2
190009904322(321)	1	190009904322(322)	2	190009904322(323)	2
190009904322(322)	2	190009904322(324)	2	190009904322(325)	2
190009904322(323)	2	190009904322(325)	2	190009904322(326)	2
190009904322(324)	2	190009904322(326)	2	190009904322(328)	2
190009904322(325)	2	190009904322(327)	2	190009904322(329)	1

전체: 10두 (1+등급: 0 1등급: 2 2등급: 8 등외등급: 0)

--	--	--

발급횟수: 1건 발행일자: 2021-10-15 16:17:07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r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은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등의 장소로 추가로 배송하는 경우 등급판정신청인은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210mm×297mm [부산지 80 g/m²(700g/m²)]